

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업 개요

□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개요

- (교육시작일) 2024. 4. 1. ~ 계속
- (교육대상)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
 - *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,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교육
 - * '23년도 12월말 청구 기준 49만 명 중 '24년도 짝수년생은 24.5만 명
- (교육주기)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
- (교육방법)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④대면
- (교육비용) 대면 36,000원, 온라인④대면 30,000원 ... 자부담
- (교육과정) 4개 영역
 - ①요양보호와 인권, ②노화와 건강증진,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,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
 - ①② 영역만 온라인 교육 가능 ③④영역은 반드시 대면교육
- (관리기관) 국민건강보험공단
- (실시기관) 한국보건복지인재원,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□ 운영지침 및 교육기관 안내 ..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

- 알림·자료실/공지사항/종사자교육/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
- 노인장기요양보험/민원상담실/검색서비스/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

□ 면제 대상

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 제2항

◆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☞ 면제대상 증빙 방법 ... 합격일 또는 합격연도 확인필요

○ **합격한 지 2년이 경과한 연도의 말일(12.31.)까지 면제**

※ '22년 합격자: '24년 면제, '23년 합격자: '24, '25년 면제, '24년 합격자: '25, '26년 면제

○ **(요양보호사) 면제 대상자인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**

☞ 보수교육 면제를 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는 **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** "합격"에 대한 **증빙자료 제출**해야 함

○ **(요양보호사) '합격' 증빙 절차**

연번	구분	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(이하 '국시원')	비고
1	개인접수	[국시원 로그인] → [면허·자격·증명서] → [증명서발급신청] → [합격확인서 발급]	유료 (1,000원)
2	단체 (교육기관) 접수	[국시원 회원가입] → [로그인] → [마이페이지] → [과거시험 정보 찾기] 통해 접수이력 연동 후 발급가능	
국시원 고객센터 : 1544 - 4244			

- '합격확인서' 외에도 합격 문자 또는 캡처화면, 열람사진 등 합격 확인되면 증빙자료 인정

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 등

○ **고시 세부사항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**

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1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3. **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** 등이 다음
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.

5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○ **고시 제51조에 따라 '근무인원 1인'으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*의 경우, 세부사항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에 따라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음**

* 입소형 기관의 요양보호사 : 시설급여기관(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포함)의 요양보호사 또는 가정 방문형 기관에서 팀장급으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

□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방법

○(대상)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

○(산정기준)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,000원 산정

* 대면 8시간 : 95,000원 (대면 4시간 : 47,500원)

○(신청방법)

① (요양보호사)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'보수교육 이수증' 제시

* 복수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경우 장기요양기관(방문형) 1개소에만 원본 제시

* 부당·중복 청구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

② (장기요양기관)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확인하고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, 지급받은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(이수증 사본 3년 보관)

* 급여비용 실제 지급 시기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 소요

■ 지급 예시

5월	6월	7월	8월
(요양보호사) 보수교육 이수	(교육기관) 이수결과 보고	(장기요양기관) 청구	지급

보수교육 이수한 달(5월)로부터 지급(8월)까지 최소 3개월

○(청구기간)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의 다다음달부터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 이내 까지

※ 보수교육 결과는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이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공단으로 보고하므로 급여비용 청구는 다다음달부터 가능

▶ 방문형(방문요양·목욕)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**근로 보전의 성격**이므로, **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**